홈페이지 <a href="http://www.woosuk.hs.kr">http://www.woosuk.hs.kr</a> 주소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 2길 22 (동산동)

# 가정통신문

발 행 일	2021년 9월 9일
담당부서	교 육 연 구 부 ☎ 210-5232

## 고사 일정 및 출결/인정점 안내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심신이 피로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정신 적인 건강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가정에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학교 고사 일정과 코 로나 19 상황에 따른 학생 인정점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힘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 1. 고사 일정

월 / 일	교시	1학년	2학년		3학년		시 정	
		공통	인문	자연	인문	자연	예령	시험
10월 5일 (화)	1	한문I	윤리와사상		한문I	한문I	8:35	8:40 - 9:30
	2	수학		생명과학I			9:45	9:50 - 10:40
	3		수학II	수학II	실용국어	실용국어	10:55	11:00 - 11:50
10월 6일 (수)	1	기술가정		물리학I	생활과과학		8:35	8:40 - 9:30
	2	국어	중국어I/ 일본어I	중국어I/ 일본어I		생명과학II	9:45	9:50 - 10:40
	3		독서	독서	중국어I/일본어I	중국어I/일본어I	10:55	11:00 - 11:50
10월 7일 (목)	1	영어	한국지리		경제	여행지리	8:35	8:40 - 9:30
	2	한국사		지구과학I		화학॥/지구과학॥	9:45	9:50 - 10:40
	3		영어II	영어II	수학과제탐구	수학과제탐구/   확률과통계	10:55	11:00 - 11:50
10월 8일 (금)	1	통합과학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물리학II	8:35	8:40 - 9:30
	2	통합사회		화학I			9:45	9:50 - 10:40
	3		한국사	한국사	실용영어	실용영어	10:55	11:00 - 11:50

<sup>\*</sup> 성적 이의신청기간 : 2021년 10월 18일 ~ 2021년 10월 20일

## 2. 코로나 19 인정점 부여기준

가. 인정점 계산 방법 : 기준점수 × <u>결시고사 평균</u> × 인정점 부여 비율

\* 인정점 : 미응시 시험에 대한 인정 점수

\* 기준점수 : 동일학기 내 동일교과의 지필평가 성적

\* 기준고사 : 2차고사 미응시 → 1차고사, 1차고사미응시 → 2차고사

\* 예) A 과목의 2차고사를 질병으로 결시한 학생의 점수 산정 1차고사 취득 점수가 65점, 해당 과목의 평균이 68.0 이고 2차고사 취득 점수가 미응시로 인해 없고, 해당 과목의 평균이 62.3 일 때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2차고사 최종 인정점 계산(80%인정)

최종 인정점  $= 65 \times \frac{62.3}{68} \times 0.8 = 47.64$ 

#### 나.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비율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 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100%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100%
N-17-3 76041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2)격리통지를 받은 <b>'즉시</b> '자가격	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리된 동거인과 <b>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b>   <b>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b>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6쪽 참고 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b>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b>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기능시),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 \* 임상증상자<sup>®</sup>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 단)서<sup>®</sup>)를 확인<sup>®</sup>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②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❸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적용 기능

#### 다.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비율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

2021. 9. 9.

우 석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